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인용조문 변경을 위한 순천시 농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1 19. ~ 1 2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 24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70호
----------	--------

발의연월일 : 2021. 1. 15.

발 의 자 : 김병권 · 장숙희
김미연 · 허유인 의원

1. 개정이유

- 안전심사 및 의안처리 등에 있어 충분한 의사일정 확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 제고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등이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 집회의 탄력성 제고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2. 주요내용

-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간 회의총일수를 연장 가능토록 함(제3조)
- 시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삭제(제4조 제1항 제1호)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넷째주 금요일”에서 “11월 22일”로 변경(제4조 제1항 제2호)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득이”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실시 등 부득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1월 넷째주 금요일”을 “11월 22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제3조(연간 회의총일수) ----- -----. <u>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u>
제4조(집회일) ①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u>부득이한 경우에는</u>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u>다만, 시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u>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주 금요일에 집회한다. <신설> ② (생략)	제4조(집회일) ① ----- -----, ---- <u>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실시 등 부득이</u> -----. 1. -----. -----, <단서 삭제> 2. ----- 11월 22일 -----. 3. <u>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사무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례회) 의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집회일) ①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실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96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전라남도 순천시(의회사무국)

제3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09. 29., 2018. 12. 31.>

제4조(집회일) ①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10., 2012. 11. 22., 2016. 05. 0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시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주 금요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01. 10.>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8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8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69호
----------	--------

○ 발의연월일 : 2021. 01. 15.

○ 발 의 자 : 이복남 의원, 서정진 의원,
김영진 의원, 김미애 의원,
박종호 의원, 이현재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순천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보존·공개하고, 평가·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 대상사업 및 실명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등록,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정책실명제 점검·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 홍보·교육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에 따라 순천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보존·공개하고 평가·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5. “시민신청실명제”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책실명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 현안이나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홍보·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다. 시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시와 민간이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약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
8. 시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사업(별지 제4호 서식)
9.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정책의 실명관리)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자료 및 그 토의내용
-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에서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6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홍보·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주요업무 평가 규칙」에 따라 설치된 “순천시정 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등록)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실명을 각인해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등에 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및 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 부서별 정책실명제 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위탁시행 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 : 인센티브 제공 또는 향후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일정기간 참여배제(또는 영구배제)
2. 공무원 : 포상 또는 징계
3. 소속기관 : 예산 및 인사상의 혜택 부여 또는 불이익 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정책 평가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2조(홍보 및 교육)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시행 및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제8조제1항 관련)

①사업부서		②담당자 (연락처)	
③정 책 명			
④선정기준		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기재항목>

-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③ 정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제8조제3항 관련)

①등록번호	②등록일자	③정 책 명	④정책요지	⑤사업부서	⑥담당자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
- ② 등록일자 : 정책실명제 등록일자
- ③ 정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 ④ 정책요지 : 정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
- ⑤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⑥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제9조제2항 관련)

①등록번호			
②등록일자		③사업부서 담당자	(부서명) (이름/사무실연락처)
④정 책 명			
⑤추진배경			
⑥사업개요			
⑦추진경과			
⑧선정기준		⑨관리부서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 칭 기재	'00.00.00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과장 ○○○팀장 ○○○주무관	
○ 내용	'00.00.00	○○○ 실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
- ② 등록일자 : 정책실명제 등록일자
- ③ 정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 ④ 사업부서 및 담당자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과 사업 담당자 기재
- ⑤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⑥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⑦ 추진경과 :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경과를 날짜 순서대로 기록
- ⑧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기준을 기재
- ⑨ 관리부서 : 사업종료 후 실제관리부서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선정 이후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정책실명제 변동사항

정책실명	변경 성명	일 시 성 명	일 시 성 명	일 시 성 명	일 시 성 명	일 시 성 명	일 시 성 명	일 시 성 명
	담당자							
	팀 장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사업 기 간	구 분	1차	2차	3차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사업비	구 분	1차	2차	3차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기 타	구 분	기 간		기 간		기 간		기 간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설계자								
	시공사								
	감 독								
	준공검사								
	감리자								
	하자검사								

[별지 제4호서식]

시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제4조8호 관련)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주소 : ☎ (H.P) :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비고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행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58호
----------	--------

발의연월일 : 2021. 1. .

발의자 : 오행숙 의원, 강형구 의원
서정진 의원, 이복남 의원
장숙희 의원, 박혜정 의원
허유인 의원, 김미연 의원

1. 제정이유

-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안 제5조 ~ 제6조)
- 라. 사업비의 지원 및 청소년쉼터 (안 제7조 ~ 제8조)
- 마. 통합지원체계 활용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대, 가정폭력 등 위기 청소년의 가능성을 안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
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 지도
4. 가출청소년의 야간 생활 지도
5. 가출청소년의 교육·복지·보호 및 생활 지원
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쉼터)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연계·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약칭 : 청소년복지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88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번호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6개소		
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020. 6. 1.
2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가출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30.
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7.
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26.
5	경기도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5. 2.
6	경상남도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16. 3. 10.

]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6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1. 15.

1. 개정이유

- 장애인 차별적 표현 변경을 통한 장애인 권익증진
- 법제처의 조례 정비 개선 권고사항(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보장) 반영

2. 주요내용

- 위원의 해촉 관련 조문의 장애인 차별적 표현 변경(안 제6조 및 제15조)
 - “심신장애로 인하여” → “사망,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 이의신청에 대한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보장(안 제21조)
 - 이의신청 거부 규정 삭제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1. 6. ~ 11. 2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1. 9.(여성가족과-2324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0. 29.(기획예산실-1504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1. 6.(순천시 공고 제2020-2266호)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15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각각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
1. <u>심신장애로 인하여</u>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u>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 -----.
1. <u>심신장애로 인하여</u>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u>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이의신청의 거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삭제>
<u>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격상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1. <u>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범위 이내인 경우</u>	
2. <u>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u>	
3. <u>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u>	

순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36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1. 15.

1. 제정이유

-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됨에 따라 노래 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안 제2조)
 -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방법 등(안 제3조~제7조)
 - 교육계획 수립, 교육강사, 교육이수자 관리 등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1. 30. ~ 2020. 12.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1. 23.(여성가족과-2431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1. 23.(기획예산실-1641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1. 30.(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공고 제2020-19호)

순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육교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강사료 지급기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숙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59호
----------	--------

발의연월일 : 2021. 1. .

장숙희 의원, 박혜정 의원

발 의 자 : 오행숙 의원, 서정진 의원

허유인 의원, 김병권 의원

1. 제정이유

-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안 제5조 ~ 제7조)
-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 (안 제8조 ~ 제13조)
- 마. 협력체계 구축 (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근로기준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수반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제1호의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한 필수업종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할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79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번호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23개소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 7.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2020. 12. 31.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1.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1.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1.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10.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9. 10.
8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3.
9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4.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11.
11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3.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8.
13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1.
14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1.
1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17.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4.
17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4.
18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2.
19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18.
20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8.
21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1.
22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8.
23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6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1. 15.

1. 개정이유

-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급 제외 기준을 재정비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2020.10.26.)

- 공익수당 지원 제외 대상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삭제

2. 주요내용

- 공익수당 지원 대상 확대(안 제14조제4호 삭제)
 - 공익수당 지원 제외 대상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규정 삭제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2. 4. ~ 12. 2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2. 1.(여성가족과-2499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2. 3.(기획예산실-1701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2. 4.(순천시 공고 제2020-2471호)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지원 제외)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제3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5. ~ 6. (생략)	제14조(지원 제외) ----- ----- -----.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6. (현행과 같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인용조문 변경을 위한 순천시 농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6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1. 15.

1. 제정이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조례,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2. 2. ~ 12.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1. 27.(여성가족과-24681, 24713, 2471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2. 1.(기획예산실-1684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2. 2.(순천시 공고 제2020-244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인용조문 변경을 위한 순천시 농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3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신·구조문대비표

□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 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 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3. (현행과 같음)

□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 9. (생략)	제2조(정의) ----- -----. 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 2. ~ 9. (현행과 같음)

□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6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1. 15.

1. 개정이유

-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조례가 폐지됨(2018. 7. 31.)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개정(2015. 6. 22.)으로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관련 조례 폐지

2. 주요내용

-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 대행 위원회 정비(안 제13조)
 -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농식품 유통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농식품유통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로 개정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0. 30. ~ 11. 19.)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0. 29.(여성가족과-2237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0. 29.(기획예산실-1504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0. 30.(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공고 제2020-10호)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농식품 유통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농식품유통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설치)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지원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되, 심의회의 기능은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농식품 유통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생략)	제13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설치) ① -----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농식품유통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6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1. 15.

1. 개정이유

○ 순천시 브랜드 슬로건 변경에 따라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개정

2. 주요내용

○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개정(별표)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0. 30. ~ 11. 19.)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0. 29.(여성가족과-2237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0. 29.(기획예산실-1504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0. 30.(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공고 제2020-11호)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u> 	「별표」 <u>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u> 

「별표」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